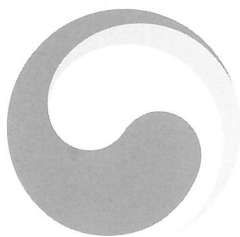




산업재산권 등록증 안내



대한민국 특허청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산업재산권 등록에 따른 연차등록료 안내

1. 산업재산권 존속기간

- 산업재산권은 설정등록(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등록)에 의하여 발생합니다
(특허법 제87조 제1항)

〈 권리별 존속기간 〉

구분 및 관련법	특허권 (특허법 제88조)	실용신안권 (실용신안법 제22조)	디자인권 (디자인보호법 제91조)	상표권 (상표법 제83조)
존속기간	출원일로부터 20년	출원일로부터 10년	출원일로부터 20년	등록일로부터 10년 <small>*분할납부의 경우 5년</small>

2.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안내

- (정상납부) 제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사전에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(특허법 제79조).
- (추가납부) 정상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추가납부할 경우 정상납부 금액에 가산료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(특허법 제81조).

〈 추가납부 기간별 가산료 〉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정상납부금액의 가산비율	3%	6%	9%	12%	15%	18%

※ 유의사항 : 추가납부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. 다만,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특허법 제81조의 3).

- **(연차등록료 납부방법)** 연차등록료는 납부서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호 서식)를 제출하여 납부하거나,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이용하여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기타 납부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납부유형	기 타 납 부 방 법
은행납부	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의 수납의뢰서를 납부등록료와 함께 은행 등에 납부
무통장 입금	CD기 / ATM기기 및 온라인을 통해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 [정상납부시에만 가능]
온라인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접속 • 로그인 후 수수료관리 → 수수료납부에 접속하여 온라인납부 또는 인터넷지로 바로가기에서 납부
자동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접속 • 로그인 후 수수료관리 → 수수료자동납부에 접속하여 자동납부 신청

※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납부시 총액의 5% 차감

3.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납부 안내

-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(상표법 제84조).
- 갱신등록료는 존속기간 갱신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하며,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(상표법 제72조 제2항).

4. 권리자의 개인정보 변경 안내

설정등록 후 권리자 성명(법인명칭), 주소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정보변경을 하여야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등 각종 안내서를 정확히 수령하여 권리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).

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patent.go.kr>)를 참조하거나, 특허고객상담센터(☎ 1544-808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산업재산권 심판 및 보호 안내

1. 특허권(실용신안권)의 무효 및 정정

- 권리등록 이후, 제3자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무효심판/취소심판(상표만 해당)/취소신청(2017년 3월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(실용신안권) 해당)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을 거쳐 산업재산권이 무효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특허(실용신안)권자는 정정심판 또는 무효심판(취소신청) 중에 정정청구를 통해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재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<http://www.kipo.go.kr/ipt>), ☎ 042-481-8534).

2.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

-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(adr.kipo.go.kr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(☎ 1670-9779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 안내

- 관세청에 지재권 권리보호를 신고하시면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통관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* 지식재산권 신고 <http://unipass.customs.go.kr> > 업무지원 > 지식재산권

* 문의 : TIPA 지식재산권신고센터(☎ 02-544-5203~4)

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분쟁대응 지원 안내

-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행사(생산, 판매 등) 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산업재산권을 등록받으셔야 합니다. 특히, 최근 해외에서 상표권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해외진출(예정)시에는 먼저 그 국가에 상표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

* 분쟁대응 상담 및 지원안내 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(☎ 02-2183-5894~6), www.ip-navi.or.kr)